

---

# 장애인 등록 시 장애유형별 필요 서류 안내

---

- 정신장애 -

2020. 01

본 자료는 「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」에 근거하여  
장애인 등록의 편의성을 증진하고자 각종 서식을 재구성한 자료입니다.  
장애인 등록을 위해 참고로 활용하시길 부탁드리며, 자세한 내용은 주민등록  
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상담 및 안내를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.

#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

- (1)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- 지속적으로 진료 받았다  
함은 3개월 이상 약물치료가 중단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.
- (2) (1)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장애진단 직전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  
과 전문의가 진단할 수 있으나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.

## 장애진단 시 필요한 구비서류

구분	구비서류	필수 기재사항 및 종류	비 고
정신 장애	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	정신질환의 진단명, 정신질환의 상태, 정신질환으로 인한 정신적 능력장애 상태 등 기재	기존 심사이력 있는 경우 1년간 진료기록지제출 (초진기록지 제출 불필요)
	진료기록지	◆ 초진기록지 : 원인 상병으로 진료받은 최초 기록지 ◆ 1년간의 진료기록 중 의사가 쓴 주요 경과기록지와 투약기록지,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간호기록지와 퇴원요약지 제출(원인상병, 치료내역, 약물처방 장애상태 등 확인을 위함)	
정신 장애 진단시 Tip		◆ 장애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이고 적절히 치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가 고착된 경우에 진단함 (3개월 이상 투약 등이 중단된 경우는 장애정도 판정이 보류됨) ◆ 제 10차 국제질병인분류(ICD-10)의 진단명이 F20 조현병, F25 조현정동장애, F31 양극성 정동장애, F33 재발성 우울장애로 진단된 경우에 한하여 정신장애 판정함 ◆ 정신질환의 상태 및 능력장애의 상태에 대해 최근 3개월 중에 증상이 가장 심하였을 경우와 가장 호전 되었을 경우의 평균적 상태를 기준으로 등급을 판정함	
<b>&lt;장애심사서류 완화&gt;</b>			
<p>○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: 기존에 등록된 장애인이 장애인연금 신청 등으로 장애정도심사를 받는 경우 <u>1년 이내</u>에 읍·면·동에 제출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가 있으면 이를 활용</p> <p>※ 장애정도를 재판정할 시기가 도래한 경우는 새로 진단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제출해야 함.</p>			

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[별지 제3호서식] <개정 2019. 6. 4.>

##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

진 단 대 상 자	성 명	성 별	
	주민등록번호		
	주 소	(전화번호: )	
장애 상태	장애유형		
	장애 부위 또는 질환명		
	장애인원인		
	장애 발생 시기		
진료기관 및 의사	의료기관	의사	진료기간 . . ~ . . .
	의료기관	의사	진료기간 . . ~ . . .
진단의사의 소견	※ 장애 정도 판정기준에 따라 검사항목·검사결과·장애 상태를 구체적으로 기재		
재판정	필요사유	재판정할 시기	

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장애 진단 결과를 통보 합니다.

년 월 일

진 단 의 사 명  
(의사 면허번호)  
(전문의 자격번호)

(서명 또는 인)

(전문의 과목)

진단기관명

직인

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###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

- 장애진단 및 진단서 발행 시 진단 받는자가 본인임을 확인해야 합니다.
- 성명, 주민등록번호 등을 위조하거나 변조할 수 없도록 투명테이프 처리한 후에 장애진단의뢰기관에 송부함을 원칙으로 하되, 부득이 사람을 통해 교부하는 경우 봉투의 봉함부분에 의료기관의 간인을 찍어야 합니다.
- 장애유형은 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 제2조에 따른 장애유형을 기재합니다.
- 진단의사의 소견란에 X-ray 촬영 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을 기재해야 하며,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장애 정도 판정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.
- 장애심사와 관련하여 장애진단을 위한 진료기록 등을 사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.